
어르신 1천만 시대,
「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」

2024. 3. 21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2
III. 비전 및 목표	4
IV. 세부 추진과제	5
1.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것입니다.	
2.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	
3.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·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	
4. 부담 덜어주는 간병·돌봄을 제공할 것입니다.	
5.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	
V. 향후 추진 일정	23

I. 추진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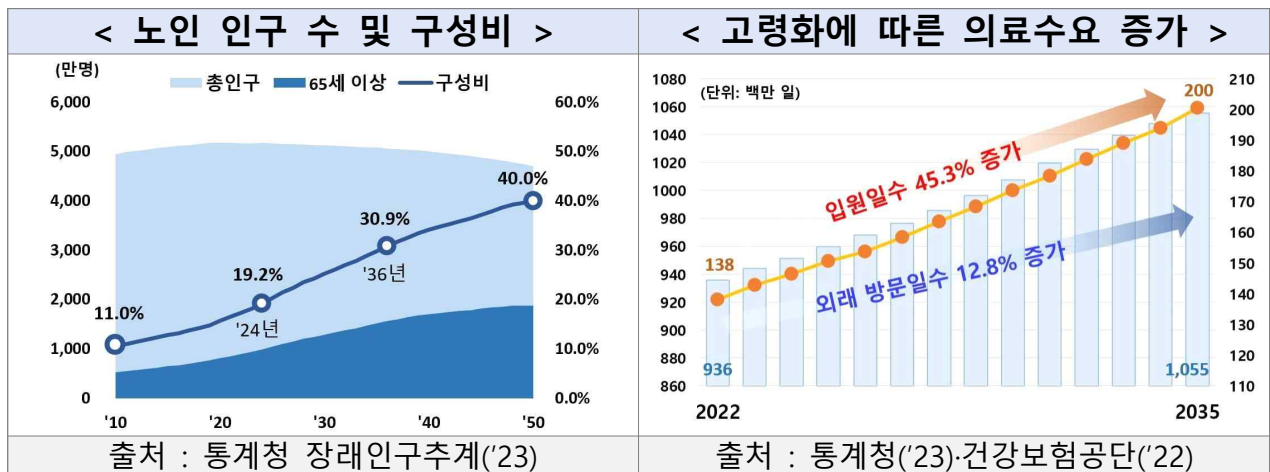
◆ 노인 인구 1천만시대,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 증가 전망

□ (초고령화) 노인 1천만('24.2월 981만명), 초고령사회('25) 진입 예상*

* [노인인구 추계/통계청] ('25)1,051만(20.3%)→('30)1,298만(25.3%)→('40)1,715만(34.3%)

○ 치매 등 일상생활(식사·가사 등)이 어려워 입원·입소를 선택하는 노인* 증가 ⇨ 진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 전망

* '24년 85세 이상(102만명), 독거노인(199만명), 치매노인(100만명) 등 돌봄 부담 본격화



◆ 연령·세대 또는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서비스 욕구 매우 다양

□ (후기 고령자) 기대수명 증가*로 85세 이상 후기고령 노인** 급증

* (기대수명) '08년 79.6세 → '20년 83.5세 → '50년 88.6세 → '70년 90.9세

** (85세 이상 노인 특성) 치매유병률 39.1%, 장기요양 이용률 38.9%

○ 치료와 요양(재가 서비스 및 병원·시설 이용), 치매 관리,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

□ (액티브 시니어) 이전 세대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* 베이비붐 세대('59~'64년생)가 노년기 진입,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 高**

* 1인당 연간 소득 '08년 700만원 → '20년 1,558만원으로 2.2배 증가('20 노인실태조사)

** 여가·취미 활동에 대한 비용지불 의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 높음

❖ 대통령 지시('22.12.15.) : 고령화 대응을 위해 농촌의 마을회관 처럼 어르신들의 식사·의료·여가 등을 공동으로 해결할 필요

II. 현황 및 문제점

1 제도 현황

① 일상생활 지원

- (식사) △총 68,223개 경로당 중 42%(28,620개) 평균 주 3.6일 제공, △총 407개 노인복지관 중 374개소 경로식당 운영
- (주거) 복지부 노인복지주택(전국 39개소, 8,840세대), 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(3,730호) 등 일상생활(식사·가사) 연계형 주택 운영

② 건강관리·여가 지원

- (건강)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낙상·치매 예방 운동,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*

* 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 ②생활체육 종목 강습(600개소) ③체력관리 교실 운영(200개소)

- (여가) 전국 경로당(6.8만개, 회원 254만명) 및 노인복지관(407개, 일평균 81만명 이용) 내 음악·체육·예술, 자원봉사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

③ 의료·요양·돌봄

- (의료) 일반적 의료체계 내에서 질환 상태별(급성기·회복기·만성기)로 병원 서비스 제공, 재가 중증 어르신 등은 재택의료·가정간호 이용
- (요양·돌봄) 장기요양 시설(요양원) 및 재가급여(방문요양 포함 6종) 제공, 안부 확인·가사·식사 등 일상돌봄 지원(노인 맞춤형 돌봄 등)

<건강단계에 따른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 현황>



<노화단계별로 필요한 의료·돌봄 서비스>



◆ 주거·식사 등 일상생활 어려움 겪는 노인 증가, 지원은 미흡

- (주거) 입주·설치기준 등 규제로 인해 중산층이 이용 가능한 노인 주택, 편찮으신 어르신을 위한 복지주택 등 공급 부족
 - * 낙상·미끄럼 방지 설비 구비, 식사·가사 서비스 등이 연계된 주택 부족
- (식사) 식사·가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미흡, 가까운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에서도 식사 해결 어려움* 존재
 - * △경로당 중 42%만이 주 3.6일 식사제공 △33개 노인복지관은 경로식당 미운영

◆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 여건 조성 필요

- (건강) 질병·노화 등으로 스스로 건강을 돌보기 힘든 노인 증가, 비교적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근린 체육시설 등도 부족
 - * '20년 기준 기대수명(83.5세)-건강수명(70.9세) ⇨ 12.6년 동안 몸이 불편한 채로 생활
- (여가)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모임 장소로만 활용되거나, 지자체가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등 이용의 사각지대* 존재
 - * △경로당의 28.1%(18,754개소)는 여가·체육·놀이 등 활성화 프로그램 미제공
△전국 34개 시·군·구 노인복지관 미설치

◆ 아파도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는 서비스 부족, 낮은 품질도 문제

- (재가) 이용 대상 한정, 제도 미성숙 등으로 인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 및 재가요양·돌봄 서비스 불충분
 - * (재택의료센터) 장기요양 수급자 한정, '24년 95개소에 불과, (노인 맞돌) 소득기준 적용
- (병원·시설) 치료가 아닌 거주 목적의 불필요한 입원 발생*, 재가 복귀를 돕는 회복기 병상 부재, 요양원 의료 기능 미흡
 - * 요양병원 역할 미정립, 재가 돌봄 서비스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
- (연계) 통합적 지원체계(지자체 내 통합지원부서,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 판정체계, 정보 플랫폼 등) 부재로 인해 서비스 제공 분절화

Ⅲ. 비전 및 목표

비전	건강하고 행복한 노후
주요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것입니다. ▶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 ▶ 아파도 내 집에서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▶ 어르신 중심의 의료·요양·돌봄 제도를 만들겠습니다.

건강하실 때	편안하고 안전한 일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서민·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② 충분한 식사 제공 ③ 일상 생활 지원 ④ 어르신 안전 보장
	활기차고 건강한 생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활력있는 백세시대 ② 일을 통한 사회참여 ③ 즐거운 디지털 교육·여가
편찮으실 때	집으로 찾아오는 의료·요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재택의료 활성화 ②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요양서비스 ③ 맞춤형 치매관리 제공
	부담 덜어주는 간병·돌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걱정없이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② 어르신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③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
기반 조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② 재정 기반 모색 등

IV. 세부 추진과제

1.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것입니다.

1 시민·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

- **노인주택 활성화**(복지부·국토부·금융위) **신규**
- (실버타운) 분양형 재도입, 입주자격·위탁운영·주택연금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(노인복지주택) 활성화
 - (분양형 재도입) '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 지역(89개소)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 활성화 도모('25)
 - *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된 불법행위,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하여 「노인복지법」 개정 등 추진('24.下~)
 - (입주자격 완화)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'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' 요건 폐지
 - (위탁운영 자격) 리츠사, 장기요양기관, 호텔·요식업체,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 개선*
 - * (기존)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가능 (개선) 신규 운영업체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건 폐지
 - (주택연금 지급)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 지급('24~)
 - (고령자복지주택)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* 공급 3배 확대(年 1→3천호) 및 유형 다변화**를 통한 도심 공급 유도
 - *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복지관을 복합 설치하여 식사·여가서비스 등 제공
 - ** (기존) 신축 1천호 → (향후) 리모델링형, 민간제안형 신설(각 1천호)하여 연 3천호 공급

<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방안 >

공급체계	신축 ^{현행}	리모델링 ^{신규}	민간제안 ^{신규}
입지특성	지역 중심	도심 중심	도심 & 지역
공급방식	신규 건설	노후임대 리모델링	민간 공모 후 신축매입
공급목표	연 1천 호	연 1천 호	연 1천 호

-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하여 중산층 입주기회 확대('24~)

□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(국토부) **신규**

○ (실버스테이 신설) 고령자 특화 시설·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'실버스테이' 도입 추진('24년 시범사업)

- △동작감지기,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, △주민 공동시설(놀이터·보육시설 등) 관련 특례 등 맞춤형 적용

○ (헬스케어 리츠)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'헬스케어 리츠*' 방식으로 공급·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** 공급('24)

* 리츠(REITs, 부동산투자회사) :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·운용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회사

** (부지 구성) △노인복지시설 55% 이상 △오피스텔 30% 이하 △근린생활·의료·운동시설 등



○ (신도시 내 공급지원) 공공택지개발 시 지자체 수요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,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및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 지원

□ 노인주택 확산 기반 강화(복지부·기재부·국토부·금융위) **개선**

○ (추가 지원방안 마련) 기재부·국토부·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TF 통해 수요·공급 활성화 방안 추가 마련('24)

○ (협업체계 강화) 건설-서비스 간 체계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 조직 설치, 인사교류 등 추진('24)

○ (주거복지 강화)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

* ('23) 111개 단지 → ('24) 130개 단지

2

충분한 식사 제공

□ 경로당·경로식당 식사 제공 확대(복지부) **신규**

- (경로당) 전체 경로당(6.8만개) 중 42%(2.8만개)에서 평균 주 3.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 마련('24~)

< 경로당 식사 확대 추진방안 >

- ① 1단계('24~) :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(2.8만개)의 식사 제공 횟수 확대
* 노인일자리 5.6만명 → 7.8만명('24.3~)
- ② 2단계('24~) : 조리시설 미설치 경로당(4만개)에 대한 시설·설비 확충방안 마련
- ③ 3단계('25~) : 식사 제공 경로당 지속 확대 및 안전관리자 배치 등 추진
(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('24) 後)

- (경로식당) 조리시설 미설치·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(33개) 내 식사제공 기반 강화*('24~)

*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개소당 10명 내외 운영인력 지원 등

- (효도밥상)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·공급하는 '효도밥상(마포구청)' 모형* 확산 검토('24~)

* △밥은 현장 취사, 반찬은 반찬공장에서 제공, △75세 이상 전체 대상 무료 식사

□ 아파트·일반주거지 등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 마련(복지부) **신규**

- (본인부담 모형)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·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 마련

- 연구용역을 통해 △유희공간 활용, △일반상가 활용한 바우처 지원 등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형 및 세제지원 등 유인체계 마련

< 아파트 식사 제공 사례 >

☐ 천안 A아파트(790세대, '12년 입주)

- 조식 4,900원, 중식 5,900원, 석식 6,900원에 제공
- 입주민 의견수렴해 기존 연회장을 식당으로 변경

☐ 김해 B아파트(3,435세대, '19년 입주)

- 중식·석식만 제공, 5,500원/6,500원 메뉴로 총 5개 구성
- 화~토요일만 운영하며 토요일은 뷔페식으로 제공



천안 A아파트 식당 내 전경

□ **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**(복지부) **신규**

- (식사 배달)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서비스 추진('23~)
 - 노인맞돌 등과 연계해 단계적 확산 추진*('24년 12개소 → '25년 전국화)
 - * '23년 퇴원환자 40명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, 가사·이동지원 등 제공 시범사업 실시

□ **사회복지시설 급식 지원 강화**(식약처) **확대**

- (급식 위생 관리) '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' 확산, 노인복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·영양관리 지원('22~)

3 **일상 생활 지원**

□ **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**(복지부) **확대**

- (서비스 확대) 중점돌봄군(약 6만명)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월 20시간(기존 16시간)으로 확대하고, 각 서비스별 제공량도 확대*('24.1~)
 - * (이동) 월 2→4시간, (가사) 주 1~2회 → 주 3회 이상 등
- (대상자 확대) 소득기준(소득하위 70%) 초과 시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 도입('25)

□ **고령층 주거환경 개선**(국토부·복지부·농식품부·해수부) **확대**

- (저소득층)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원~1,241만원의 보수·수리 비용 지원('24~)
 - * 장판·도배 교체, 창호·단열·난방공사, 지붕·욕실·주방 개조 등 지원
- (장기요양 수급자) 문턱제거,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「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」 확대('24.下~)
 - * ('23) 15개 지역 → ('24.下) 전국화
- (농어촌 인프라)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^{농식품부}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*, ^{해수부}어촌신활력증진사업(2유형)** 확산 **확대**
 - * ('22) 22개소 → ('23) 30개소 → ('24) 33개소 지원
 - ** ('23) 30개소 지정 → ('24) 10개소 신규 지정해 총 40개소 지원


4

어르신 안전 보장

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·고도화(복지부) **확대**

- (대상자 확대) △독거노인 소득 기준(소득하위 70%) 폐지('24.上) 및 △본인부담 방식 도입('24.下)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확대

<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>

기기 구성	주요 서비스
 <p>응급호출기 응급버튼을 누르면 소방서(119)로 연결돼요</p> <p>게이트웨이 119로 소방서로 연결 통화, 저장된 비상연락처(자녀 등)로 전화</p> <p>화재감지기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(119)로 연결돼요</p> <p>활동량감지기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줘요</p> <p>졸음감지기 꿈이 알려고 당인 할 알려줘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화재 감지) 센서 통해 화재 감지 시 119에 곧바로 신고 ▪ (응급 호출) 화장실 또는 침실의 응급호출기 통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 신고 가능 ▪ (활동량 감지) 활동 감지기와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, 심박·호흡 등을 측정해,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

- (고도화) 웨어러블·AI 신기술을 활용해 위험감지기능 고도화('24~)
 - * 활동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상·고독사 및 건강 이상 여부 등을 예측·분석해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안 마련 ('24~, 연구개발 기획 추진)

□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(복지부) **확대**

- (신고체계 강화)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추진(12개→18개 직군, '25~), 신고앱(나비새김) 활용성 제고*('24~) 등 신고체계 강화
 - * △요양병원,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보호자 대상 앱 설치 안내·홍보 강화, △도움 요청 목소리 반응·신고기능 간편화 등 사용성 개선 등
- (취업제한·교육) 노인학대 범죄경력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(9개→14개), 노인보호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* 등 추진('24~)
 - * 교육과정 세분화(조사원 기초, 심화 등), 온라인·플랫폼 기반 상시 운영 등

□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(행안부·국토부·경찰청) **개선**

- (보행 안전) △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지원, △마을주민 보호구간 조성 지원*, △노인보호구역 지속 확대('24~)
 - * 고령자 비율이 높은 읍·면지역 마을통과 도로의 보도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
- (안전 운전) 고령 운전자 대상 온·오프라인 교통안전교육* 지속 실시('24~)
 - * 경찰청·도로교통공단 등 주관, 65~74세는 권장교육/75세 이상은 의무교육(3년 주기)

2.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

1

활력있는 백세시대

□ **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**(문체부, 복지부, 지자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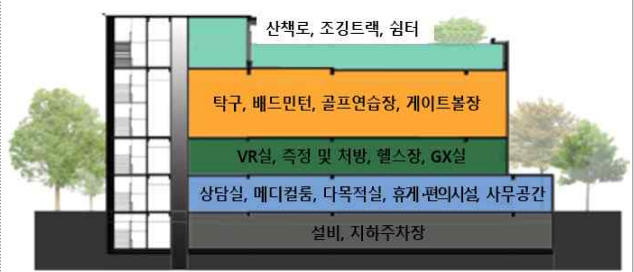
- (체육시설)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·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'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*' 확대** **확대**

* △개소당 4년간 30억원의 건립비 지원, △시설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구성·설치

** ('23) 3개소 → ('24) 11개소(신규 8개)

<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 >

- 시설구성 : 탁구, 배드민턴, 골프연습장, 게이트볼장 등 종목시설과 물리·재활 치료가 가능한 메디컬룸 등
- 지원규모 : 4년간 30억원
※ 1차년도 2억원 지원 (설계비 등)



- (파크골프 활성화)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지속 지원*하고('23~),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('24)** **확대**

* (복지부) 대통령기 전국 노인파크골프대회('23.9월 제1회 대회 개최, 국비 1억 지원), (문체부)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('24.3월 제1회 대회 개최)

** 「체육시설법」 시행령 제2조(정의) 개정('24.上)

-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(문체부), 파크골프장을 지속 확충*(지자체) **확대**

* '24년 신설 예정 : 울산(2), 경산(3), 천안(1), 고성(1), 세종(1), 양천(1) 등

□ **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**(문체부, 복지부)

- (생활체육지도자)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*을 통해 노인복지관·경로당 등 방문 확대 추진('24~) **확대**

* '23년 기준 1,200여명 배치, 총 17만회 방문

- (노인일자리 활용)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, 운동 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추진*('24) **신규**

* 「노인운동모델 개발 및 운동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」로 방안 마련 후 착수('24.上)

□ **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어르신 활용 활성화**(문체부)

- (통합플랫폼)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·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('23~) **신규**

* 시스템 구축을 위한 「스포츠마일리지 정보화전략계획(ISP)」 수립('23)

- (활용처 확대) 민간보험료, 진료비(건강보험 본인부담금)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 확대 추진('24~, 문체부·복지부) **신규**

* (현행)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체육시설 이용, 스포츠용품 구매에 사용

- (기반 확대) 국민체력100센터*를 추가 지정('24년 74개소)하고, 노인 복지관·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 개선** **확대**

* 체력측정·평가, 운동처방 등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(국민체육진흥공단)

** '24년 1만명 대상으로 인센티브 혜택 제공

□ **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**(복지부, 문체부) **확대**

- (운동프로그램 개발)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허약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개발('24)

* 연구용역을 통해 노인 걷기법·체조법 등 개발('24), 건보공단·한국건강증진개발원·체육진흥공단·학계 등의 연구 및 사업 등 토대로 지속 개발(연중)

- (운영매뉴얼 확산)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*을 제작·배포('24.下)하여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 정립

* 「노인운동모델 개발 및 운동 참여 활성화 방안」 연구를 통해 개발

- (찾아가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)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(공공체육시설 등 연계)

□ **어르신 운동정보 홍보·교육 확대**(복지부, 문체부) **확대**

- (홍보) 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, 운동참여 인센티브*, 운동 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 강화('24)

* '스포츠활동 인센티브'(국민체육진흥공단), '노인건강 마일리지 시범사업'(건보공단) 등

- 건보공단 앱(The 건강보험),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,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'24.上)

- (교육) 국민체력인증센터(전국 74개소, 문체부), 건보공단지사(전국 178개소), 보건소 등에서 노인운동 필요성 교육*('24)

* 노인운동 인식개선 자료를 제작하여 노인운동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포('24.上, 건보공단)

□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(복지부) **확대**

- (노인 10% 참여) 역대 최대폭('24년 14.7만개 ↑) 노인일자리 확대*, '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%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 확대
 - * ('04) 2.5만개 → ('17) 47만개 → ('23) 88.3만개 → ('24) 103만개
- (고임금 일자리 확대) 일자리 보수 6년 만에 대폭 인상*('24년)
 - * △공익형 27 → 29만원, △사회서비스형 71.3 → 76.1만원
 - 경험·역량 높은 노인 위한 사회서비스·민간형 일자리 40% 이상 확대, 저소득·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은 적정수준(60%) 유지
 - * △공익형 60.8→65.4만개, △사회서비스형 8.5→15.1만개, △민간형 19→22.5만개
- (약자복지 지원)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·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 중점 확대('24~)
 - 거동불편 노인 식사·가사, 경로당 이용자 지원('27년 31만명), 아동·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확보 지원('27년 27만명)
- (제도정비) 「노인일자리법」 제정('23.10)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, 일자리 통계 기반 구축, 민·관 협력 확산, 체계적 교육 운영 등
 - * 수행기관 다변화, 민간·공공기업과 협업, 장기고용 인센티브 및 경력인정 규정 등
- (폐지수집 어르신)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('24.6) **신규**
 - * 폐지수집 노인 약 4.2만명, 평균 연령 76세, 1주 32.4시간, 월 수입 15.9만원

□ 고용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(고용부) **확대**

- (전직 지원) 준비 없는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해 전직 또는 재취업이 필요한 중·장년에게 고용서비스 확대('24~)
 - * 중장년내일센터 확충('23년 31개 → '24년 35개), 생애경력설계 서비스('23년 4만명 → '24년 5만명) 등
- (계속 고용) 경사노위 내 의제별 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“계속고용 로드맵” 마련 추진('24)

□ **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**(복지부) **확대**

- (활동비) 지역사회 공헌* 및 재능나눔 활동**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(1인당 연 20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, '24~)
 - * 주거 및 환경보호, 생활편의지원, 안전지도(교통안전, 지역 방범 활동 등)
 - ** 상담 및 안내(말벗, 전문·진로상담, 치매 예방 등), 교육지도, 문화예술, 보건의료
- (운영 지원) △전국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, △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기획·사전 준비·실행하도록 운영매뉴얼 제공('24~)

□ **어르신 기초연금 확대**(복지부) **확대**

- (연금 인상)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, 노인 빈곤 해소 지원('24~)
- (선정기준액)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원, 부부가구 341만원으로 인상('24)
 - * (선정기준액) **단독** ('23) 202만 → ('24) 213만, **부부** ('23) 323.1만 → ('24) 340.8만원
- (소득인정액)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,000cc 기준을 폐지하고, 차량가액 4,000만원만 적용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합리화('24~)

□ **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**(복지부, 국토부) **개선**

- (생계급여)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대 월 21.3만원 증액(4인가족 기준)
 - * (생계급여 지원) **1인** ('23) 62.3만 → ('24) 71.3만, **4인** ('23) 162.1만 → ('24) 183.4만원
- (주거급여)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상향(47→48%),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개선('24~)
- (의료급여)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제외하는 등 급여 수혜 대상 확대('24~)

3 **즐거운 디지털 교육·여가**

□ **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**(복지부·과기부) **신규**

- (접근성 개선) 키오스크·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위해 「노인복지법」 개정 추진('24~)
 - * 고령층 대상 키오스크·모바일앱 관련 편의 제공 의무조항 신설

- (교육 지원) '디지털배움터*(과기부)를 통해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('24)
 - * 누구나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·도서관·복지관 등 통해 교육 제공
- (R&D)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기술개발*을 위해 복지부·과기부 공동 기획사업 추진 검토**
 - * 고령친화적 키오스크·앱, 인지·신체감각 증강기술 등 개발
 - ** 「다부처공동기획사업추진위원회」의 '25년 다부처공동사업 대상과제로 선정('24.2월)

□ **경로당 활성화**(복지부·과기부) **개선**

- (여가활동) 다양한 교양·취미 활동(음악·체육·교육 등) 지원 강화
 - 지역별 '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*' 개발·보급을 위해 경로당 중앙 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지원(17개소, 개소당 1억원)
 - * 경로당 통한 건강운동, 건강관리, 교육·상담, 여가활동, 사회참여 등 지원
- (스마트경로당)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여가·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'스마트경로당' 확대(복지부·과기부 협업)
 - * ('23) 889개소 → ('24) 1,391개소 확대(누적 2,280개소)
- (미등록 경로당) 1,676개 미등록 경로당에 동절기(1~3월) 난방·양곡비 지원,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 지원('24)
 - * 전수조사된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과 동일하게 냉·난방비 지급('24.1월 40만원 이내 既지급), 급식이 가능한 곳에는 양곡비 추가지급 가능 안내('24.2월)
 - 준경로당제를 운영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 전까지 행정·재정 지원 지속, 등록기준 완화 등 양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('24~)
 - *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요건 등 합리적 기준 및 방안 마련 추진('24.下)

□ **어르신 문화·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**(문체부)

- (문화재능 제공) 문화재능 제공 프로그램* 홍보 및 어르신 참여 활성화
 - * 이야기할머니(전통이야기 구연), 인생나눔 교실(멘토링), 실버마이크 지원(문화예술 공연 등)
- (문화·예술 향유) 시니어 관광 지원*,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제공,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 문화예술 향유 지속 추진
 - * 고령층 대상 여행교육 제공('23년 720명→'24년 2,000명) 등

3.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·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1 재택의료 활성화 (복지부)

□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 **확대**

- (전국 확산)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* 전국 확산** 추진(~'27)

*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·간호사·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방문진료·간호,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의료-요양-돌봄 통합 사례관리 제공

** ('24년, 2차 시범사업) 95개소 → ('27년 전국화) 250개소

- (건보 확대) ①장기요양 1,2등급자 중 외상환자, ②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 본인부담 인하*(30→15%)('24.上)

* (현재) 방문진료료 128,960원 중 환자 38,680원(30%) 부담 → (개선) 19,340원(15%)

-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(現 의원급에만 적용)('24.上)하고,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 추진('24~)

□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

- (방문간호) 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(180일→1년),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 도입('25~) **개선**

- (가정간호) 가정 전문간호사 외에도 일정 교육과정 이수 시 가정 방문 간호가 가능하도록 「의료법」 시행규칙 개정('24~) **개선**

- (간호통합센터) 퇴원환자 등에게 가정간호·방문간호·방문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'재택간호 통합센터' 도입('24.7~) **신규**

<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(안) >



□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 **확대**

- (중증 재가) 중증(1·2등급)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*(~'27), 및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 확대('26~)

* (1등급) '23년 189만원 → '24년 207만원, (2등급) '23년 169만원 → '24년 187만원

- (수시방문) 어르신들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多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('24.下~)

□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확대 **확대**

- (통합재가) 통합재가기관 지속 확산 및 전면 확대('23년 75개→'27년 1.4천개)

* (서비스 내용) ▲한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제공, ▲간호사, 물리(작업)치료사,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, ▲이동지원 등 특화서비스 제공

□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 **개선**

- (병원동행)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* 확산('24~)

* 참여 지자체 확대 및 주야간보호기관 차량 활용 등(~'24), 본사업 추진(~'27)

- (주·야간센터) 장기요양 주·야간보호센터 이동 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·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·개조 비용 지원('24)

□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양화 및 보급 **개선**

- (제품 다양화) 이원화된 등재방식을 제품으로 단일화(품목→제품) 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,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* 추진('23~)

* 신규 품목(기저귀센서·구강세척기)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('23.7월~), 혁신기술, 비용구조 다변화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확대 추진('24.下~)

- (보급 확대) 건보공단 복지용구 정보제공 및 이용지원 체계 강화, 복지용구 사업소 인력·장기요양요원 등 대상 교육과정 마련('24~)

3

맞춤형 치매 관리 (복지부)

□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**신규**

- (주치의)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·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도입 추진(시범사업*, '24.7~)

* (1차년도 : '24.7~) 20개 시·군·구 → (2차년도 : '25.7~) 규모확대 → (본사업 : '26.下) 전국

□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**개선**

- (예방) 치매 前 단계인 '경도인지장애' 조기진단 및 집중관리 강화
-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중요성 홍보 및 별도 관리 매뉴얼 개발, 난청 등 치매악화 위험인자* 관리 방안 마련 ('24~)

* 경도인지장애 중 10~15%가 치매로 진행되나, 난청 등 위험인자 관리 시 최대 40% 예방

- (맞춤형 관리) 치매 어르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확대('23년 18개 시·군·구 → '24년 전국)

□ 치매 친화 환경 조성 **개선**

- (실종 예방)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(월 880원~5,325원),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*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지속 추진('24~)

* 소형 지문 스캐너 및 112 업무용 휴대전화 활용한 신원확인 시스템('24.2월~)

- (모델 확산) 치매 돌봄체계 도입 확산을 위해 치매안심마을* 등 우수사례 발굴·홍보 강화 추진('24~)

* 치매환자와 가족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지역사회('23년 800개소)

- (용어 개선)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불식될 수 있도록 '치매' → '인지저하증'으로 용어 변경 ('24~, 「치매관리법」 개정 추진)

- (치료제 개발) 치매극복 R&D*(복지·과기) 지속 추진('20~'28, '24년 191억원)

* 원인규명, 예측 및 진단기술, 예방기술(한국형 치매 예방·관리 프로그램 개발) 및 치매치료제(다양한 타겟활용 근원적 치료제) 등 개발 지원 중

□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 개편 **확대**

- (제도개선) 장기요양 치매가족휴가제 非치매 1·2등급으로 대상 확대, 치매 수급자 급여 이용기준 개선(단기 12일, 종일 24회) 추진(~'26)

4. 부담 덜어주는 간병·돌봄을 제공할 것입니다.

1

걱정없이 이용하는 병원서비스 (복지부)

□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 **신규**

- (간병지원)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 제도화 추진('24~)

- ① (1단계) 대상환자, 선정방식, 환자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요양병원 20개소 대상 시범모형 추진 ('24.4~'25.12)
- ② (2단계) 필요 간병인력,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자원 등을 정밀 추계하여 모형 고도화 및 본사업 준비 ('26.1.~'26.12.)

- (지원 대상) 중증(최고도·고도) 비율 1/3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고, 의료·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(의료·요양 통합판정 결과 활용)

- (간병 질관리) 간병인 관리·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및 교육·훈련 프로그램 마련·배포, 표준계약서 작성 등 거래 투명화 추진

* 간병서비스 시장 질 제고 위해 공급기관 관리기준 및 등록제 도입 등 병행 추진

□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제공 **확대**

- (중증위주 제공) 의료기관별 서비스 제공으로 경증환자 선별 구조 차단, 중증·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*('24.7~)

*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1:5 → 1:4, 간호조무사 1:40 → 1:8

- (근무여건 개선)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 적용*, 대체 간호사 배치지원 및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('25~)

* (간호사 대 환자 수) 1:7, 8, 10 ⇨ 1:5, 6, 7(환자 중증도·간호필요도와 연계)

- 병동 지원인력(요양보호사 등)도 일정한 범위 내 간병 업무 허용, 간호조무사 최대 3.3배 확대 배치(1:40 → 1:12) ('24.7~)

□ 만성질환 관리 확대 **확대**

- (사업 확대) “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” 지속 확산('24~)

* 동네의원이 중심이 되어 고혈압·당뇨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

□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 **신규**

- (모형 도입) 집과 유사한 환경(1:2인실, 공용 공간,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)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 확산('24~)
- * 신규·기존 시설이 참여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('24.4~) 및 본사업 추진('25~)

□ 공급 부족지역 중심으로 요양시설 확충 **개선**

- (규제개선)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해 시설진입 제도개선 검토('24~)
- (공립시설)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('18~'22년, 128개소) 및 공립 주·야간, 단기보호기관 확충 지원

□ 요양시설 의료·간호 강화 **개선**

- (계약의사) 건강관리 위주 계약의사 역할 강화('24~)
- * 계약의사의 전문과목, 건강상태 악화시 전원조치 기준, 재택의료센터 의사 활용 권고 등 '계약의사 운영규정(지침)' 보완 추진('24)
- (전문요양실) 시설 내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요양실 확대('24~)
- * 간호인력 배치 강화(약 4배), 계약의사 방문 확대(월2회→주1회), 별도 전담공간(유니트) 기준 마련('24~) 등 추진

□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**개선**

- (근로환경 개선) 요양보호사 1인당 수급자 비율 축소* 추진('24)
- * [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] 2.5:1(기존) → 2.3:1('22.10~) → 2.1:1('25)
- (처우 개선)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과 장기근속 등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추진('24~)

□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**개선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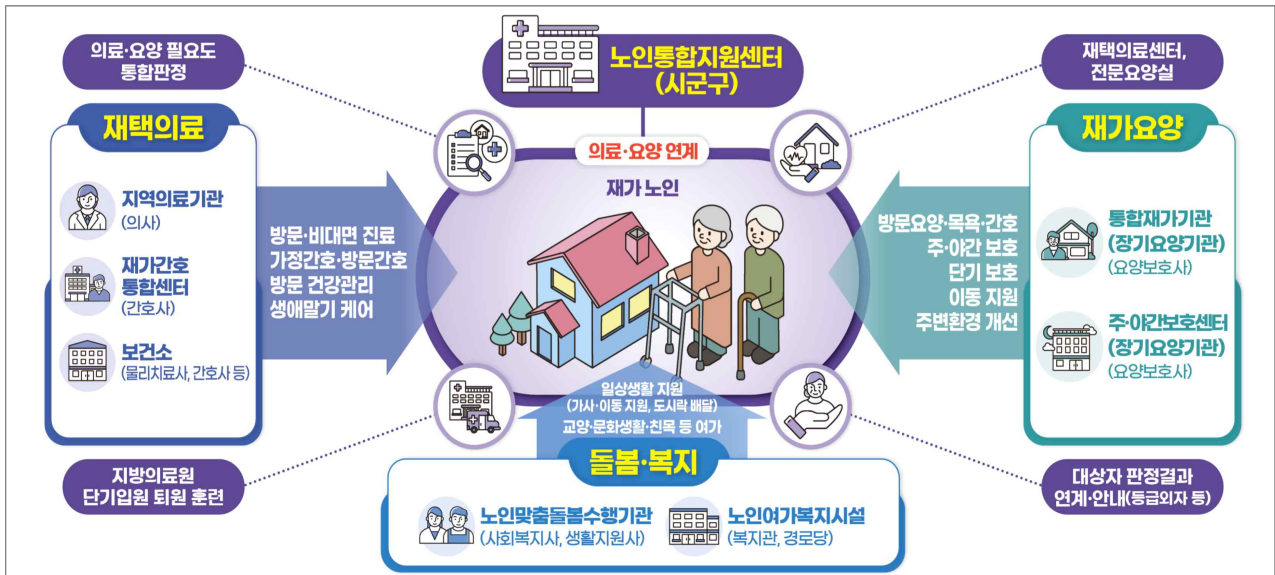
- (체계 개편) 신체·인지기능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* 기반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('27)
- * 등급체계 개선 관련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의 타당성·수용성 평가

3

어르신 중심의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체계 (복지부)

□ (목표)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쇠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·돌봄서비스를 통합·연계 제공

<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·제공·연계(안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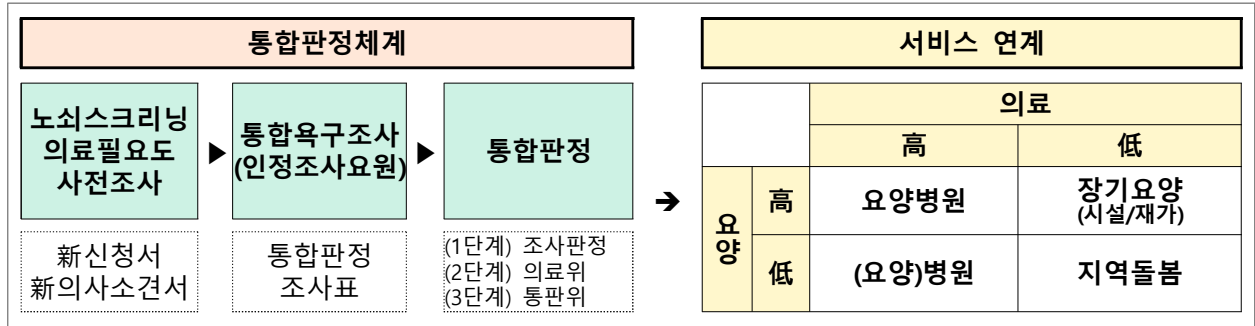
□ [신청]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·돌봄 서비스 신청 **신규**

- (신청구조)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(건보공단, 주민센터) 신청·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 마련(‘24~)
 - * (현재) 장기요양은 건보공단, 돌봄서비스는 주민센터에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 신청 →(개선) 건보공단, 주민센터 구분없이 장기요양,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연계하여 신청 접수
- (시스템) 신청·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검토

□ [판정]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**신규**

- (통합판정)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,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 도입(~’27)
- (요양병원 간병 연계)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·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*에게는 간병지원 추진(‘24~)
 - * 의료 최고도·고도+장기요양 1·2등급자 중 통합판정 실시

<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>



- (의료돌봄 통합지원)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,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지원 제공('24~)

□ [연계]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 **신규**

- (통합지원센터)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·군·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('23~)
 - *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후 전국 확산 추진('26~)
- (사례관리) 어르신의 생활·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,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 배치 추진('26~)

□ [퇴원 지원]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원 지원체계 마련 **신규**

- (연계 강화)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(시·군·구) 중심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추진('23~)
 - ※ 사례(진천군) : 의료기관에 간호사 파견, 퇴원 노인 케어플랜 수립 후 재가돌봄으로 연계
- (재활의료기관) 급성기 퇴원 노인(뇌졸중·척수손상 환자 등)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지원('23~, 53개소)
 - * [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] : 1단계('17.10~), 2단계('20.3~), 3단계('23.1~) 시행
- (회복기 병원)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('24) 및 시범운영* 추진('25~)
 - * 급성기·회복기·만성기 병원 및 지자체·일차의료기관 간 의료 연계·의료체계 구축
- (케어안심주택) 거동이 불편해 퇴원 후 재가 복귀가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 공간(예: 안산시 케어안심주택*) 확산('24~)
 - * 문턱 제거·높이조절 세면대 등 안전 확보 및 방문요양·목욕·식사 등 서비스 연계

5.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

□ 의료·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(복지부) **신규**

- (법률 제정) 어르신에 대한 보편적 돌봄 보장을 위해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4)

- *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('24.2)
- 중앙·지방정부의 통합지원 전담 조직·예산·사업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, 노인 돌봄의 중·장기 추진 기반 확보

< 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주요 내용 >

- ㉠ (대상) 기존 선도사업('19~'22)에서 불명확했던 지원 대상을 요양병원·시설 입원·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*, 장애인 등으로 구체화
 - * 장기요양 재가급여자,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, 급성기(요양) 병원 퇴원환자 등
- ㉡ (제공방법) 의료·요양 욕구에 대한 통합적 조사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, 재택의료, 재가 요양·돌봄 등 적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
- ㉢ (기반) 서비스 신청·조사, 대상자 정보관리 및 모니터링 등 전달체계를 시·군·구 중심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간 실질적 연계 강화

- (하위법령)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·시행규칙 등 마련(~'24)

□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반 모색 **신규**

- (재정 기반) 일본·영국 등 해외사례와 지역소멸기금과 같은 국내 사례를 참고해,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재원 구조를 비교·검토

- * 노인 돌봄 관련 기금 필요성, 용처, 재원 등에 대한 연구 진행('23~, 보사연)

□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·돌봄 R&D 지원(복지부) **신규**

- (R&D 지원) 임무중심 혁신 R&D(한국형 ARPA-H 프로젝트)를 통해 복지·돌봄기술을 개발, 건강수명 연장 및 가족 부담 완화('24~)

- * (과제 예시) 근감소증 치료기술, 초소형 방문의료 진단기기, 돌봄·웨어러블 로봇 등

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 과제		일정	담당 부처
1.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것입니다.			
1-1. 서민·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			
1	- 노인주택 활성화	'24~	복지부·국토부
2	-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확산	'24~	국토교통부
3	- 노인주택 확산 기반 강화	'24~	보건복지부
1-2. 충분한 식사 제공			
1	- 경로당·경로식당 식사 제공 확대	'24~	보건복지부
2	- 아파트·일반주거지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 마련	'24~	보건복지부
3	-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배달 서비스 도입	'24~	보건복지부
4	- 사회복지시설 급식 관리 강화	'24~	식품의약품안전처
1-3. 일상 생활 지원			
1	-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	'24~	보건복지부
2	- 고령층 주택환경 개선	'24~	복지부·국토부
1-4. 어르신 안전 보장			
1	-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·고도화	'24~	보건복지부
2	- 노인학대 예방체계 강화	'24~	보건복지부
3	- 어르신 교통안전 강화	'24~	행안부·국토부·경찰청
2.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			
2-1. 활력있는 백세시대			
1	-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	'24~	복지부·문체부
2	-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	'24~	복지부·문체부
3	-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어르신 활용 활성화	'24~	문화체육관광부
4	-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	'24.下	보건복지부
5	- 어르신 운동정보 홍보·교육 확대	'24.上	보건복지부
2-2. 일을 통한 사회참여			
1	- 노인일자리 확대 및 고도화	'24~	보건복지부
2	- 고용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	'24~	고용노동부
3	- 어르신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	'24~	보건복지부
4	-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	'24~	보건복지부
5	-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선	'24~	보건복지부
2-3. 즐거운 디지털 교육·여가			
1	-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	'24~	보건복지부
2	- 경로당 활성화	'24~	복지부·과기정통부
3	- 어르신 문화·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	'24~	문화체육관광부
3.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·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			
3-1. 재택의료 활성화			
1	-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	'24~	보건복지부
2	- 장기요양 방문간호 등 방문형 간호서비스 활성화	'24~	보건복지부

추진 과제		일정	담당 부처
3-2.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서비스			
1	- 충분한 재가급여 제공	'24~	보건복지부
2	- 장기요양 통합재가기관 확대	'24~	보건복지부
3	-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다양화	'24~	보건복지부
4	- 장기요양 복지용구 다양화 및 보급	'24~	보건복지부
3-3. 맞춤형 치매 관리			
1	- 치매관리 주치의 도입	'24~	보건복지부
2	-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	'24~	보건복지부
3	- 치매 친화 환경 조성	'24~	보건복지부
4	- 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 개편	'24~	보건복지부
4. 부담 덜어주는 간병·돌봄을 제공할 것입니다.			
4-1. 걱정없이 이용하는 병원서비스			
1	-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제도화	'24.上	보건복지부
2	- 간호·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제공	'24.下	보건복지부
3	- 만성질환 관리 확대	'24.~	보건복지부
4-2.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			
1	-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	'24.上	보건복지부
2	- 공급 부족지역 중심으로 요양시설 확충	'24~	보건복지부
3	- 요양시설 의료·간호 강화	'24.上	보건복지부
4	-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	'24.上	보건복지부
5	-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	~'27	보건복지부
4-3. 어르신 중심의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체계			
1	(신청)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·돌봄 서비스 신청		보건복지부
	- 서비스 신청구조 개선	'24.上	보건복지부
	- 정보시스템 구축	'24.上	보건복지부
2	(판정)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		보건복지부
	- 통합판정체계 도입	'24.上	보건복지부
	- 요양병원 간병 연계	'24~	보건복지부
	-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	'24.上	보건복지부
3	(연계)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원스톱 연계		보건복지부
	- 통합지원센터 설치	'24.上	복지부·행안부
	- 종합사례회의 운영 및 전문 케어코디네이터 배치	'24~	보건복지부
4	(퇴원 지원)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퇴원 지원체계 마련		보건복지부
	- 퇴원환자 지원 정보공유 및 돌봄 연계	'24.上	보건복지부
	- 재활의료기관·회복기병원 운영	'24~	보건복지부
	- 서비스연계주택 마련	'24.上	보건복지부
5.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.			
1	- 의료·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하위법령 마련	'24.上	보건복지부
2	-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 기반 모색	'24.上	보건복지부
3	-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·돌봄 R&D 지원	'24~	보건복지부